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25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이학영・이정문・한민수

강득구 • 정준호 • 문금주

임호선 · 전재수 · 문정복

김재원 · 김현정 · 김영배

한정애 • 유호중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

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 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 니다.

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,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

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.

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회 및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·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"경호"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, 특정 지역을 경계
 ·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.
- 2. "경호구역"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.
- 3. "소속공무원"이란 국회경호처(이하 "경호처"라 한다) 직원과 경호 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.
- 4. "관계기관"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 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.
- 제3조(국회경호처장 등) ① 국회경호처장(이하 "처장"이라 한다)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,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 감독한다.
 -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.

-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, 처장을 보좌한다.
- 제4조(경호대상)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.
 - 1. 국회의장과 그 가족
 - 2. 국회의장 당선인과 그 가족
 - 3. 국회의장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
 - 4.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회의원 및 국내외 요인 등
 -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5조(경호구역의 지정 등)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파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.
 -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, 교통관리, 검문·검색, 출입통제,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.
- 제6조(직원)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 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- 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-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7조(임용권자)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용한다. 다만, 전보·휴직·겸임·파견·직위해제·정직(停職)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.
 -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모든 임용권을 가진다.
 -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8조(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)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- 1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③ 제2항 각 호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.
- 제9조(비밀의 엄수) ① 소속공무원[퇴직한 사람과 원(原) 소속 기관에

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0조(직권면직) ① 임용권자는 직원(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.
 - 1. 신체적·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 - 2.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 - 3. 직제와 정원의 개폐(改廢)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(廢職) 또는 과원(過員)이 된 때
 - 4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 - 5.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 - 6.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 ② 제1항제2호·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, 업무실적, 직무 수행 능력,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1조(정년)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연령정년

가. 5급 이상: 58세

나. 6급 이하: 55세

2. 계급정년

가. 2급: 4년

나. 3급: 7년

다. 4급: 12년

라. 5급: 16년

② 경호공무원이 강임(降任)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 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 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.

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(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경호공

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 의 계급정년으로 한다. 다만,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.
- 2.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.
-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- 제12조(징계)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.
 -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. 다만, 5 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한다.
 -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보상)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(傷痍)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가족 및 사망(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사람의 유

족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을 한다.

- 제14조(「국가공무원법」과의 관계 등) ① 직원의 신규채용, 시험의 실시, 승진, 근무성적평정,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 -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
 - ③ 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5조(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6조(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)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,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, 위원은 국회규

- 칙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- 1. 국회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
- 2. 국회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
- 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-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) ① 경호공무원(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(司法警察官吏)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,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(司法警察吏)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8조(직권 남용 금지 등)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.
- 제19조(무기의 휴대 및 사용)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

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.
- 1. 「형법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 할 때
- 2.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- 3.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
- 제20조(손실보상)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 - 1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(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
 - 2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
 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.
 -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 -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국회규칙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

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21조(벌칙) ① 제9조제1항,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·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